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. 11. 19 선고 2022가단152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3. C

원고 1, 3의 소송대리인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

담당변호사 장준동

피고D

변론 종결2024. 10. 15.

판결 선고2024. 11. 19.

주 문

1.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0628분의 20430 지분에 관하여, E과 피고 사이에 2022. 2. 21.

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고 한다)을 취소하고, 피고는 E에게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. 3. 2.1) 접수 제97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
이행하라.

이 유

원고들은 E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하고 있다. 그러나 을 제40호증[부산고등법원 2023나55453 청구이의 사건 판결문]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,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이 E에 대하여 여전히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거나, 설령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[원고들은 2024. 8. 19.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,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다].

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학승

별지

1) 소장에 2022. 2. 21.로 기재되어 있으나, 이는 오기로 보임